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438
----------	-------

발의연월일 : 2026. 1. 30.

발 의 자 : 박정하 · 윤한홍 · 김재원
진종오 · 고동진 · 박상웅
김위상 · 엄태영 · 김형동
김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에게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 자격 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보유한 자가 관광안내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특정 국가 또는 이념적 관점에서 편향된 설명을 제공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관광통역안내 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정치적·사회적으로 편향된 설명을 제공하여 국가의 이미지를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자격취소·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관광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9항, 제40조제6호 및 제86조제1항제3호 신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관광안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정치적·사회적으로 편향된 설명을 제공하여 국가 이미지를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8조제9항을 위반하여 관광통역안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정치적·사회적으로 편향된 설명을 제공한 경우

제8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8조제9항을 위반하여 관광통역안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정치적·사회적으로 편향된 설명을 제공한 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략) <u><신설></u>	-----. 1. ~ 5. (현행과 같음) 6. 제38조제9항을 위반하여 관 <u>광통역안내 업무를 수행함에</u> <u>있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u> <u>나 정치적·사회적으로 편향</u> <u>된 설명을 제공한 경우</u>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략) <u><신설></u>	제86조(과태료) ① ----- ----- ----- -----. 1.·2. (현행과 같음) 3. 제38조제9항을 위반하여 관 <u>광통역안내 업무를 수행함에</u> <u>있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u> <u>나 정치적·사회적으로 편향</u> <u>된 설명을 제공한 자</u>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